제정 2017년 3월 10일 훈령 제262호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청소년 기본법」및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,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에 따라 오산시가 직영하는 꿈빛나래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 및 소재지) 꿈빛나래 청소년문화의집(이하 "문화의집"이라 한다) 은 경기도 오산시(이하 "시"라 한다) 청학로 125에 둔다.

제3조(적용) 이 규정은 시가 직영하는 문화의집을 대상으로 한다.

제2장 운영

- **제4조(운영원칙)** ① 시장은 문화의집을 설치 목적과 청소년 관계법령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문화의집을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에 따라 청소년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용자의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고성방가, 혐오감 등으로 다른 이용자가 퇴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- 제5조(운영시간 및 휴관) 문화의집 시설의 운영시간 및 휴관은 다음 표와 같다.

구 분	운영시간	비고
연 중	10 : 00 ~ 21 : 00	화~금요일
12 8	10 : 00 ~ 18 : 00	토요일, 일요일
동절기	10:00 ~ 20:00	화~금요일
(11월~2월)	10:00 ~ 18:00	토요일, 일요일
휴 관	_	월요일, 법정공휴일

- **제6조(시설사용방법 등)** ① 문화의집 시설사용은 휴관일을 제외하고 운영시 간 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 - ② 문화의집은 청소년전용시설로써 청소년 및 청소년 시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,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.
 - ③ 관장은 문화의집 정규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있거나 정치적, 종교적, 영리목적 등 청소년시설의 설치목적에 반하거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.
 - ④ 관장은 시설사용자가 허가된 내용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시설 내에서 흡연 및 음주 등 시설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 중에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.
 - ⑤ 시설사용자는 시설 내 기자재의 위치변경, 부착물 등 시설물의 위치를 조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장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며, 사용 종료 시사용하기 전과 같은 상태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.

제3장 직제 및 사무분장

- **제7조(관장의 역할)** 관장은 문화의집 운영 및 청소년 프로그램 실행을 총괄한다.
- 제8조(공통사무) 문화의집 공통사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.
 - 1. 시설물의 유지·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 - 2. 이용자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
 - 3. 청소년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발굴·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
 - 4. 다른 청소년문화의집·청소년시설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
- 제9조(청소년활동사업) 청소년활동사업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청소년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
 - 2. 청소년 동아리 활동에 관한 사항
 - 3. 학교 및 지역사회의 청소년활동 연계사업에 관한 사항
 - 4. 사업실적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
 - 5. 청소년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
- 제10조(방과후아카데미) 방과후아카데미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기본학습과정, 전문체험과정, 문화의집 주관 방과후활동, 토요체험활동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
- 2. 방과후아카데미 생활지원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
- 3. 지역연계 활용을 통한 방과후 참여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
- 4. 방과후아카데미 운영방안 및 후원에 관한 사항
- 5. 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
- **제11조(교육훈련)** ① 관장은 직원자질 및 업무처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소속 직원에 대해 전문 교육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 - ② 관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교육 및 연수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.
 - ③ 관장은 직장 및 직원에 대한 교육계획을 매년 1월까지 수립하여 시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교육경비 등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.
- 제12조(업무조정) 관장은 문화의집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소관 업무를 통합 또는 신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4장 기간제근로자 관리 등

- **제13조(기간제근로자 관리)**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「오산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」을 준용한다.
- **제14조(근로시간)** ① 1주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.
 - ② 정기휴관일은 휴무로 한다.
 - ③ 업무특성상 청소년 행사 등으로 부득이하게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휴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, 휴일근무를 한 경우에는 다른 날에 휴무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제15조(당직 및 비상근무) 과장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, 도난 등 각종사고의 예방 또는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직 또는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다.
- 제16조(비밀엄수) 직무로 인하여 알게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

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, 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 「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」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.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
- 2.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진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진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
- 3.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
- 4. 그 밖에 시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을 이루기 위해 비밀로써 보호 할 필요가 있는 사항
- 제17조(영리업무의 금지) 직원은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제10조와 같이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,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, 시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득을 취득하거나, 시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.

제5장 실습규정

- 제18조(실습운영) ① 청소년관련학과 대학(원)생이 청소년지도 현장실습을 원할 경우에는 우수한 청소년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.
- **제19조(실습생 자격 및 정원)** ① 실습생은 2년제 이상 대학(원)생이며 청소 년관련학과 재학생이어야 한다.
 - ② 한 학기 실습생의 정원은 7명 이하로 한다.
- 제20조(실습지도자 역할) 실습지도자는 관장이 되며, 실습지도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실습목표 설정
 - 2. 실습지도 계획서 작성
 - 3. 실습생의 실습목표 성취정도와 실습상황 확인 등
 - 4. 실습관련 문제발생을 예방하거나 문제 상황 중재
 - 5. 실습예산 집행

- 6. 실습평가서 작성
- **제21조(실습평가회)** 실습종료 시에는 실습지도자의 주관 하에 프로그램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실습평가회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6장 시설보안 및 안전관리

- 제22조(출입문 단속) ① 사무실은 최종 퇴근자가 창문개방, 화기단속 등 내·외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소등 후 퇴실하여야 한다.
 - ② 퇴근 이후에는 당직자가 시설 내·외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제23조(폐문 후의 건물출입) ① 폐문 이후에는 건물출입을 금지하고 부득이 한 사정으로 출입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관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제24조(비상시 대책) 전 직원은 화재경보기, 소화기, 옥내 소화전, 비상계단 등의 위치와 사용방법을 숙지하여 비상시의 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.
- 제25조(화기단속) 전 직원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.
 - 1. 위험물· 발화물질 발화예방, 폭발물 및 위험물 반입 금지
 - 2. 특수 장소의 가스, 전열, 석유를 사용하는 열기구는 관장이 승인한 장소 에 설치
 - 3. 퇴근 시 소화 및 소등 준수
 - 4. 가스 사용방법 준수
- 제26조(시설 안전관리 및 점검) ① 관장은 건축, 소방, 승강기, 전기 및 가스 등의 안전관리는 개별법령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 - 1. 문화의집 안전관리 및 점검
 - 2. 소방시설 안전관리 및 점검
 - 가. 방화관리 대행업체 월 1회 점검
 - 나.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연 2회 전문업체 점검
 - 3. 승강기 안전관리 및 점검
 - 가.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업체 월 1회 점검
 - 나.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연 1회 정기검사

- 4. 전기시설 안전관리 및 점검
- 가. 전기 안전관리 대행업체 월 1회 점검
- 나. 한국전기안전공사 연 1회 전기시설 안전진단
- 5 도시가스 안전관리 및 점검
 - 가. 한국가스안전공사 연 1회 점검
- 제27조(안전교육) ① 문화의집을 이용하거나 각종 강좌를 수강하는 청소년 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별 교육 시작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, 안전교육의 대상과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문화의집 이용 시 유의사항 및 비상시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
 - 2. 유형별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
 - 3. 그밖에 해당 문화의집 이용 및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안전에 관한 사항
 - ② 직원은 문화의집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
 - 야 하며,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소방 및 가스에 관한 사항
 - 2. 수련시설의 운영기준, 위험발생시 대처방법, 시설이용자 안전 및 위생교육 등

부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문화의집 시설 사용신청서

접수번호 제 호

	단체명		
신 청 자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	
	신청인원	명 (남 : 명 / 여 : 명)	
	구분	성인 () 청소년 ()	
		(2	
사용일시		년 월 일()~ 년 월 일() : ~ : ()	
사용시설 대관시설		□ 노래쉼터(노래방) □ 다목적실 □ 동아리실 □ 스포츠활동실 □ 음악연습실 □ 진로교육체험실(가온실) □ 교육문화체험실(다온실) □ 기타	
	부속시설	□ 냉·난방 □ 프로젝터 □ 노트북 □ 음향장비	
사용목적 및 행사내용			
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			
		신청인: (서명)	
오산시장 귀하			